

의안번호	2204508
의 퇴 인	김도읍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5.
추계번호	24C4187
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7,800만원(연평균 7,56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(안 제6조)	40	—	—	40	—	80	16
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	140	—	—	140	—	280	56
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9조)	3.6	3.6	3.6	3.6	3.6	18.0	3.6
추가재정소요	183.6	3.6	3.6	183.6	3.6	378.0	75.6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·경제·보건·복지·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※ 실태조사는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	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·경제·보건·복지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9조(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)	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·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2조(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1.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. 빈곤노인 상담 및 지원사업에의 연계, 정보 제공 3.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4. 그 밖에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※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
5	안 제13조(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4조(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·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○ 기획재정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안 제9조(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)	○	○ 제정안의 조항을 참고하여 추계
4	안 제12조(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3조(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)	×	
6	안 제14조(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2조~제14조 등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 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,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며,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,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빈곤노인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획재정부의 「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」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안 제6조제3항은 본 실태조사를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별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- 기획재정부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을 분석하고, 이에 기반하여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「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」 연구용역을 실시 (소요 예산 4천만원)
- 본 추계서는 기획재정부 사례의 연구용역비(4천만원)를 준용하되, 추계기간 연구용역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천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	40	-	-	40	-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빈곤노인의 사회·경제·보건·복지·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기본경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보건복지부의 「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」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의 원인 분석 및 실태 진단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빈곤 해소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2016년 「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」 연구용역을 실시(소요예산 1억 3,250만원)
 -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 사례의 연구용역비(1억 4천만원)를 준용하되, 추계기간 연구용역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억 8천만원(연평균 5,600만원)으로 추계

[표 3]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(안 제7조)	140	-	-	140	-	280	5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안 제10조는 동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 6인(보건복지부장관·기획재정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문화체육관광부차관·고용노동부차관·여성가족부차관)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민간위원은 9인으로 가정

-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¹⁾씩 지급하며,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,800만원(연평균 360만원)으로 추계

[표 4]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회의수당 단가(A)	0.2	0.2	0.2	0.2	0.2	—	—
인원 수(B)	9	9	9	9	9	—	—
회의개최 횟수(C)	2	2	2	2	2	—	—
추가재정소요(A×B×C)	3.6	3.6	3.6	3.6	3.6	18.0	3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, 이를 준용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